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상정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윤 인 상)

가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며재단 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임.
- 대표이사는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(임원) 제3 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(임원의 선출방법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(2대 홍대의)의 임기가 2009. 7. 31.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후보자 2인을 선발하고 이중 1인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.
- 이에,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3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

성 명 (한 자)	생년 월일	성별	주 소	주 요 경 력	최종 학력	비고
이 **	1949.	남	경기 안양시	·산업자원부 부이사관	육군	
(李**)	9. 21		동안구 평촌동	(감사담당관)	사관	
	(60세)			•산업자원부 서기관	학교	
				(전자무역팀장, 홍콩 영사,	졸업	
				석탄산업과장)	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-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

의 번	안호	제438호
의	결	2009. 7. 10.
년 _월	일일	(제153회)

제출년월일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며 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임.
- 대표이사는 부천시 산업진홍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(임원) 제3항 및 부천산업진홍재단 정관 제7조(임원의 선출방법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(2대 홍대의)의 임기가 2009. 7. 31.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후보자 2인을 선발하고 이중 1인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.
- 이에,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제3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

성 명 (한 자)	생년 월일	성별	주 소	주 요 경 력	최종 학력	비고
o] ** (李**)	1949. 9. 21 (60세)	남	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	·산업자원부 부이사관 (감사담당관) ·산업자원부 서기관 (전자무역팀장, 홍콩 영사, 석탄산업과장)	육군 사관 학교 졸업	

□ 대표이사 임명 관련 규정

-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
 - ▶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2항
 - ▶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를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참고사항

-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목적
 - ▶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'03. 2. 11.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'03. 3. 13. 법인 등록
- 대표이사의 직무 및 임기(재단 정관 제8, 9조)
 - ▶ 직무 :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
 - ▶ 임기 : 2년(연임가능)